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도개면 신곡리 시유림 산100-1 ⇔ 구평동 사유림 산91-30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

- 상기 임야(구평동 산91-30)는 천생산성 산림욕장과 연접한 임야로서 최근 급증하는 산림욕장 이용객들의 수용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 시유림(신곡리 산100-1)과 교환, 향후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임야 확보 및 시유임야 집단화를 통한 시유지 재산 가치 상승 효과 기대.

2. 주요내용

[교환 대상 재산]

□ 취득 재산 : 1필지, 45,967㎡

- 소재지 : 구미시 구평동 산91-30
- 예정가격 : 126,409천원(감정가)

□ 처분 재산 : 1필지, 166,116㎡

- 소재지 :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100-1
- 예정가격 : 116,281천원(감정가)

3.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1 필)	45,967	126,409	1(1 필)	45,967	126,409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1 필)	45,967	126,409	1(1 필)	45,967	126,409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1 필)	166,116	116,281	1(1 필)	166,116	116,281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1 필)	166,116	116,281	1(1 필)	166,116	116,281

200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대상 수 량	추정가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대상자	참 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	처분	임야	도개면 신곡리 산100-1번지	166,116	166,116	116,281	2008년 하반기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	강기명	시유지
	계		1필지	166,116	166,116	116,281				
1	취득	임야	구평동 산91-30 번지	45,967	45,967	126,409	2008년 하반기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	구미시	사유지
	계		1필지	45,967	45,967	126,409				
계	토 지	처분	임야	1필지	166,116	116,281	2008년 하반기			
		취득	임야	1필지	45,967	126,409	2008년 하반기			
	건 물	처분								
		취득								
	기 타	처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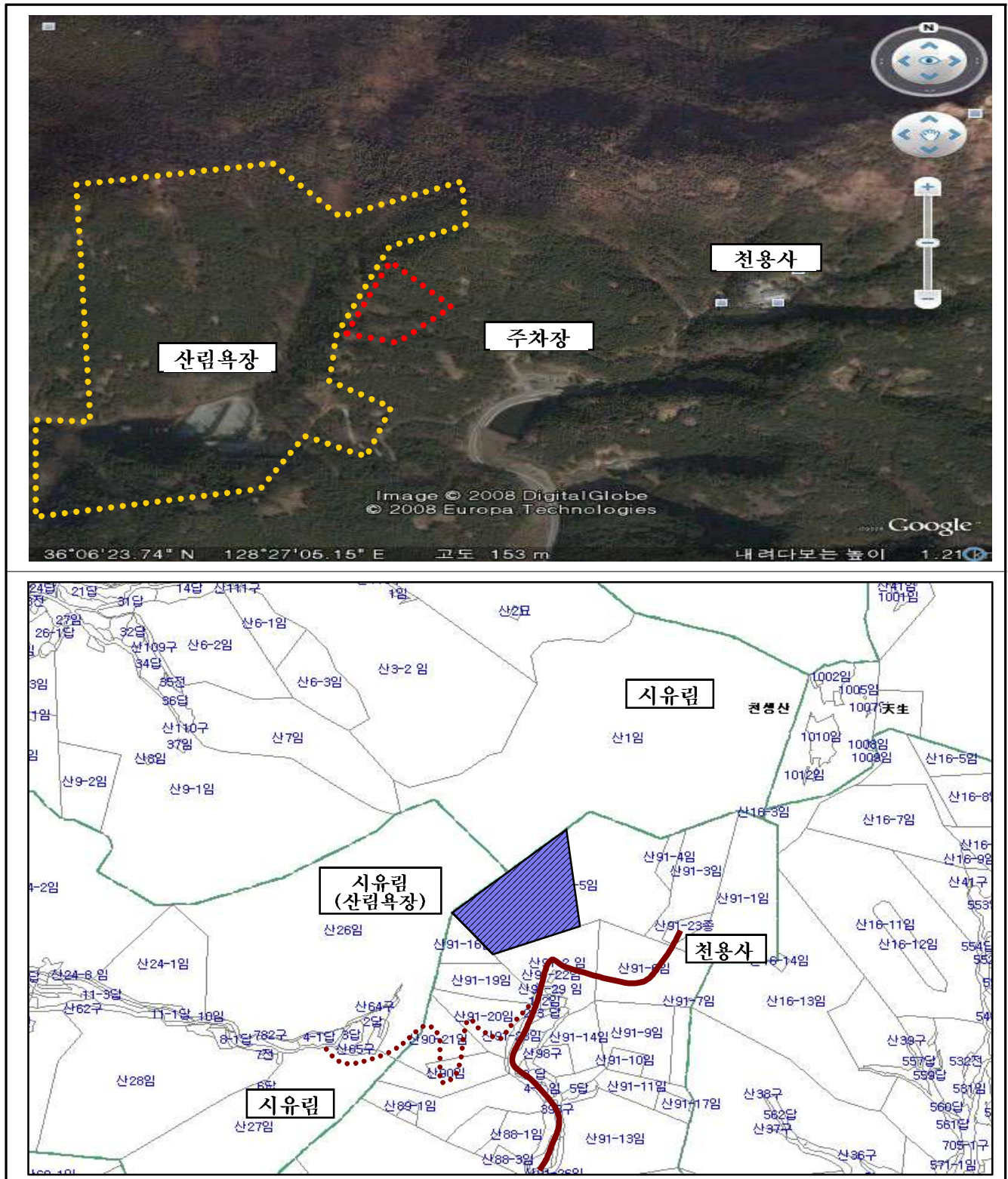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천생산성산림욕장 확대조성 대상지(사유림)

○ 소재지 : 구미시 구평동 산91-30번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45,967m²)

□ 현황도



처 분 대 상 토 지

□ 재산의 표시 : 시 유 림

○ 소재지 :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100-1번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166,116㎡)

□ 현황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생 략)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을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제44조 (교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